

# 2021년 제1차 전문위원회 온라인비대면 회의록 개요

<b>회의일시</b>	2021.01.27.(수) 14:00~15:50	<b>진행방법</b>	온라인비대면 회의 (Zoom 화상회의)													
<b>주관부서</b>	연수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b>회의기록</b>	전담직원 정아영													
<b>참석자</b>	위원장 : 최윤희 / 부위원장 : 박진하 위 원 : 김문수, 김혜미, 윤종만, 이규원, 최성남 < 위원정수 8명 중 7명 참석 >															
<b>안 건</b>	◆ 제1안 : 긴급복지지원 및 SOS복지안전벨트지원 심의(안) ◆ 제2안 :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제3안 : 일정기간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안) ◆ 제4안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추진계획(안) ◆ 제5안 : 2021년 자활사업 추진계획 심의(안)															
<b>회의내용</b>	◆ 제1안건-긴급복지지원 및 SOS복지안전벨트지원 심의(안) : 12건(중복포함)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내용 및 요청사항</th> <th>결과</th> </tr> <tr> <th>대상</th> <th>심의사항</th> <th>종류</th> <th>위기사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장 9 적정성 1 SOS 2</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계 주거 의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li> <li>•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li> <li>•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기관(부서) 추천을 받은 경우</li> <li>•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li> <li>•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li> <li>•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li> </u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b>원안 가결</b></td> </tr> </tbody> </table>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12	연장 9 적정성 1 SOS 2	생계 주거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li> <li>•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li> <li>•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기관(부서) 추천을 받은 경우</li> <li>•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li> <li>•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li> <li>•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li> </ul>	<b>원안 가결</b>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12	연장 9 적정성 1 SOS 2	생계 주거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li> <li>•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li> <li>•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기관(부서) 추천을 받은 경우</li> <li>•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li> <li>•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li> <li>•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li> </ul>	<b>원안 가결</b>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안-1) 생계급여가 아닌 주거급여 선정사유 : 만65세 미만은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어 근로능력 불가, 부양의무자 여부 등의 처리 기간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신청 후 지원 종료 시점에 위기사유 지속 시, 생계급여 신청을 통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li> <li>• 1안-6) 뺑소니사고 국가배상 가능여부 :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가배상이 가능한 대상인지 해당여부 재확인하겠음.</li> <li>• 1안-4, 7) 심의요청일 수정 :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수정하겠음.</li> <li>• 2021년 재산기준 및 소득기준 설명 요청 : 긴급복지지원 3% 증액 (4인가구 기준 126만원 정도 지원가능함),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기준 완화됨. 한시적 완화 기준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이후 상황은 3월 경 결정 예정임.</li> <li>• 코로나19로 인한 인정 사항 설명 요청 : 긴급지원법에 명시된 사항 외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실직,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실직 등이 해당됨.</li> <li>• 연수구 관내 노숙인 지원시설 여부 : 연수구 관내에는 시설이 없어 노숙인 발견 상황에 따라 서구 은혜의 집이나 남동구 부랑인 관련 시설로 연계하고 있음.</li> </ul>																

◆ 제2안건-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16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1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li> <li>•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li> </ul>	

☞ 의견

- 2안-14)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상태 자세한 설명 요청 : 긴급지원 수급 종료 (생계급여 6개월, 주거급여 12개월)에 따라 수급신청함. 자녀명의 대출 이후 상환하지 못하여 자녀들도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완전히 단절됨.
- 2안-14) 승인여부 논의 :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없고, 자녀들의 부양의무능력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아 원안 동의하나, 부양의무자 소득수준 정도, 대출금액 등을 추가로 자세히 기록해둘 것을 요청함.

◆ 제3안건-일정기간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안) : 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기간 일반재산 인정 차량</li> </ul>	

☞ 의견

- 3안-1) 일반재산에서 제외되는 차량 기준 설명 요청 :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재산 제외 대상 차량은 중증장애인 차량(100%), 생업용 차량(50%) 감면이 되고 있으며, 승용자동차 16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임.
-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원이나 본인에게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도 1600cc 미만에만 인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압류, 폐차, 운행정지명령, 차량말소 등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본 신청자는 해당되지 않음.
- 4월까지의 유예기간을 두고, 종료되는 시점에 차량소유여부 확인 후 변동이 없을 경우 지원 중지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4안건-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추진계획(안) : 원안가결

☞ 의견

- 환수조치 비율 및 미환수 시 절차 설명 요청 : 2020년 기준 219건 중 82건 미납으로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장을 유지하고 있는 자의 경우 생계비에서 차감하며, 아닌 경우 세외수입 징수통보를 통해 환수하고 있음.
- 40p [조사대상자 범위] '관할지역내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사회복지기관 이용자들 중 조사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아 상호 의뢰 등을 통해 협조체계 구축 요청함.

◆ 제5안건-2021년 자활사업 추진계획 심의(안) : 원안가결

☞ 의견

- 2020년 대비 예산감소 사유 설명 요청 : 자활장려금 예산이 2020년 본예산대비 27,200만원 (약 5%) 감소함. 이는 인천 전체 집행률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 계산 예측 오류로 발생한 사항임.
- 국정평가 가중치 적용 여부 설명 요청 : 국정평가 결과 인천 내에서 1등으로 가중치는 근로유지형 비율이 일정 부분이 되면 적용받는 사항으로 최근 연평균 5년 간 자활 참여자 수, 20년 간 참여자 수 등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받음.
- 2021년 인천시 복지정책과 반지하세대 지원사업 중 '환풍기설치 지원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자활센터 운영 권고 지침 등이 내려왔는지 문의 : 아직 지침이나 안내를 시에서 받지 않았으나, 연수지역자활센터 잘 활용하여 사업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음. 올 해 기존에 비해 신규사업단도 많이 늘어난 상황임.
- 국정평가 결과 높은 성과를 갖게 된 요인 문의 : 센터와 구와의 긴밀한 협조 및 사회보장과 내 팀 간 협력 등이 잘 이뤄지고 있고, 인천시 성과금 지급사업 등의 운영으로 탈수급을 높이고자 노력한 것이 요인이라고 봄.
- 2020년 결산자료와 2021년 계획자료 요청 : 연수지역자활센터 결산자료 제출 전으로 현재는 바로 확인이 어려움.
- 운영비 8,000만원 축소 사유 설명 요청 : 센터 규모에 따라 진행되는 평가에서 확대형에서 표준형으로 운영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축소된 예산으로 사업량 축소등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음. 3년 간 표준형 운영 후 확대형으로 전환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청년대상 자활사업(자산형성사업) 좋은 제도임에도 참여율이 낮는데, 홍보사업 방향에 대한 계획 설명 요청 : 유튜브 홍보 고려 중이며 동별 협조를 통한 전광판 홍보, 라디오, 지역신문 및 연수한마당 등에 안내 중.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나 대상자체의 한계 등으로 신규 발굴이 어려운 상황임. 기관협조요청, 통합사례회의 시 홍보 방문 등으로 홍보방향을 넓혀가겠음.
- 회의자료 p58 사업별 추진개요 중 자활기금사업 예산액 130,000천원으로 정정.

차기회의

◆ 2021년 제2차 전문위원회 서면심의

- 일시 : 2021년 2월 25일(목) 14:00, 연수구청 2층 영상회의실
-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준수를 위하여 온라인회의 또는 서면심의로 변경하여 진행될 수 있음.

## 2021년 제2차 전문위원회 온라인비대면 회의록 개요

<b>회의일시</b>	2021.02.25.(목) 14:00~15:00	<b>진행방법</b>	온라인비대면 회의 (Zoom 화상회의)															
<b>주관부서</b>	연수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b>회의기록</b>	전담직원 정아영															
<b>참석자</b>	위원장 : 최윤희 / 부위원장 : 박진하 위 원 : 김문수, 김혜미, 윤종만, 이규원, 최성남 < 위원정수 8명 중 7명 참석 >																	
<b>안 건</b>	◆ 제1안 : 긴급복지지원 및 인천형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제2안 :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제3안 :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제외 및 가족관계 해체 심의(안)																	
<b>회의내용</b>	◆ 제1안건 긴급복지지원 및 인천형긴급복지지원 심의(안): 6건(중복포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내용 및 요청사항</th> <th>결과</th> </tr> <tr> <th>대상</th> <th>심의사항</th> <th>종류</th> <th>위기사유</th> <th rowspan="2">원안 가결</th> </tr> </thead> <tbody> <tr> <td align="center">6</td> <td>연장 3 적정성 2 인천형 1</td> <td>생계 의료</td> <td>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기관(부서) 추천을 받은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td> <td></td> </tr> </tbody> </table> <p>☞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p> <p>1) 1안-6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명 자녀의 양육을 부부가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인데, 자녀들의 보육이나 돌봄 상태 확인 요청함.</li> <li>⇒ 첫째 자녀가 04년생 고등학생, 세대주는 74년생, 아내는 76년생으로 자녀들 모두 미성년자로 실질적인 케어를 두 부부가 하고 있으며 교육문제로 송도 거주 의사를 밝히고 현재도 송도에 거주하고 있음.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강하고 자녀케어를 스스로 하고 있음.</li> <li>• 자녀들의 연령대와 부부의 출산여부 확인 요청함.</li> <li>⇒ 04년생부터 20년 10월생까지 8명으로, 대부분 1~2살 터울로 부부가 모두 직접 출산한 자녀들임.</li> </ul> <p>2) 1안-5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 연장 건으로 금융재산이 조사 중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 요청함.</li> <li>⇒ 기초수급대상자로 기본적인 재산은 조사 완료된 사항으로 신규로 조사 중인 사항이 중앙 일괄처리로 인해 1~2개월 지연되고 있음. 조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심의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있어 사전에 심의를 요청하였음.</li> </ul>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원안 가결	6	연장 3 적정성 2 인천형 1	생계 의료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기관(부서) 추천을 받은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원안 가결														
6	연장 3 적정성 2 인천형 1	생계 의료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기관(부서) 추천을 받은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제2안건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17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1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li> <li>•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li> <li>•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보장이 곤란한 가구로 일반재산 반영</li> </ul>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2안-7번

- 양극성 정동장애는 조울증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질환으로 인한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은 진단서를 통해 결정하는지 근로능력 판정 절차 안내 요청함.  
⇒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진단서가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참고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받아 판단하고 있음.
- 관리가 필요한 증상으로 보이는데 수급대상으로 결정 후 사후관리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안내 요청함.  
⇒ 조사팀을 통해 선정 후 관리팀으로 사례를 이관하여 필요한 서비스 욕구를 파악 후 해당 서비스 및 바우처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제3안건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제외 및 가족관계 해체 심의(안) : 5건 중 4건 가결, 1건 부결 (3-4)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수정 가결
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 해체</li> </ul>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3안-3번

- 양육비를 법적으로 지급하게 명령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함.  
⇒ 법적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구에서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없고, 개인이 민사로 소송을 해야하나 법적으로도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임.

2) 3안-4번 (소득 수정요청 8,384,841원)

- 가족관계 해체기간의 최소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근거인지 설명 요청함.  
⇒ 지침에는 관계에 대한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화번호 유무, 연락 이력, 동시 출입국 사실, 초본 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의 단절이 있어야한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가족관계 해체 전제가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볼 때 현재 아들들이 경제적인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딸을 부양의무자로 보고 선정하지 않을 경우 지원체계가 있는지 설명 요청함.

	<p>⇒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으나 수급이 중지될 경우,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기초연금도 받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들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들의 부양능력여부 확인 요청함.</li> </ul> <p>⇒ 아들은 부양능력이 없는 상황임.</p> <p>※ 해당안건은 딸의 연락처도 알고 있고, 왕래가 끊어진지 6개월이 채 넘지 않았으며 현재도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할 시, 오히려 딸이 부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봄. 통상적으로 가족관계 해체 기간을 1년 이상 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가족관계해체를 판단하는 통상적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 동안은 위기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초연금과 필요 시 긴급생계지원 등을 연계하고, 추후 가족관계 해체에 대한 심의가 다시 필요한 경우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함.</p> <p>⇒ 3-4안건은 부결하는 조건으로 3안건에 대해 수정안가결로 결정함.</p>
<p><b>차기회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제3차 전문위원회 서면심의</li> <li>- 일시 : 2021년 3월 25일(목) 14:00, 연수구청 2층 영상회의실</li> <li>-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준수를 위하여 온라인회의 또는 서면심의로 변경하여 진행될 수 있음.</li> </ul>

-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2021년 제3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개요)

<b>회의일시</b>	2021.03.25.(목) 13:30 ~15:00	<b>회의장소</b>	연수구청 3층 대상환실				
<b>주관부서</b>	연수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b>회의기록</b>	전담직원 정아영				
<b>참석자</b>	위원장 : 최윤희 / 부위원장 : 박진하 위 원 : 강근형, 김문수, 김혜미, 윤종만, 이규원 < 위원정수 8명 중 7명 참석 >						
<b>안 건</b>	◆ 제1안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후보자 적격심사 및 선정심의(안) ◆ 제2안 :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제3안 :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제4안 :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 제외 및 가족관계 해체 심의(안)						
<b>회의내용</b>	◆ 제1안건-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후보자 적격심사 및 선정심의(안)						
	<b>내용 및 요청사항</b>						
	<b>적격심사</b>						
	<b>연번</b>	<b>성명</b>	<b>생년월일</b>	<b>성별</b>	<b>소속 및 직위</b>	<b>평균</b>	<b>결과</b>
	1	김석겸	67.08.20	남	인천장애인증합복지관/사무국장	88.7	적격
	2	김성신	63.08.07	여	동탄 금강자연어린이집/대표원장	84.6	적격
	3	당경자	50.10.20	여	(사)대한노인회연수구지회 부설 노인대학/학장	61.7	적격
	4	정미경	64.02.02	여	청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위원	61.3	적격
	5	한영구	81.04.24	남	연수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사무국장	77.7	적격
	6	한종근	60.05.11	남	옥련중앙교회/담임목사	64.6	적격
	7	황성주	67.06.27	남	해내기보호작업장/원장	85.9	적격
	8	김구일	60.11.09	남	옥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위원	76.6	적격
9	김기완	55.02.02	남	-	65.6	적격	
10	김순영	62.08.09	남	굿모닝보청기 / 대표	73.0	적격	
11	최윤봉	54.12.02	남	동춘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위원	70.3	적격	
<b>심의결과 : 가결</b>							
1. 기존 후보자 7명 중 7명 전원 평균 60점 이상으로 외부이사 추천 후보군 유지. 2. 신규 후보자 4명 중 4명 전원 평균 60점 이상으로 외부이사 추천후보군에 추가함. * 첨부 : 연수구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후보자 적격심사 결과표							
● 가결 ☞ 11명 중 11명 선정 ● 향후일정 ☞ 3월 26일 추천후보군 모집결과 20일 간 공고 예정 (구 홈페이지)							

※ 연수구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후보자 심사 기준표 관련 논의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토의사항

1) 심사기준에 대한 정의

- 경력을 급여를 받는 직업활동과 급여를 받지 않으나 상근 수준의 활동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 경력은 통상적으로 급여를 받는 지급활동으로 통일하고, 공익활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평가하기로 함. (사회복지시설의 대표로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는 관련법도 개정된 점 고려하여 공익활동으로 산정하기로 함.)
- 공공성 영역 내 공익활동 점수 산정에 대한 논의  
⇒ 봉사활동의 시간 기준은 연 100시간, 최근 1년 내 시간으로 산정함.  
⇒ 봉사활동과 각종 지역위원회 참여 각각의 영역에 대한 전체 점수를 합산할 경우 기준점수인 30점보다 더 높은 50점을 받을 수 있음. 이의제기가 이뤄질 수 있는 사항으로 차기 지침 수정 시 변경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동의함.  
이번 심사 시에는 각 영역 점수 중, 높은 점수로 최대 30점으로 산정하여 심사하기로 함.

2) 연수구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업무 처리지침 수정(안) 제안 사항

- 공공성 영역의 공익활동 세부 영역별로 점수 산정  
⇒ 공공성을 명확히 정리해서 논란이 없도록 봉사활동과 지역위원회 활동을 각각 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 기관 실무자는 업무 활동 중 봉사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문제가 될 수 있음. 명확한 점수산정 및 심사가 가능한 지표와 점수로 변경이 필요함.  
⇒ 봉사활동의 경우 99시간과 100시간은 1시간 차이에 20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서 점수 간격을 사회복지전문성 영역처럼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명시  
⇒ 외부이사의 역할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참여해야 함. 심사위원 역시 책임감을 갖고 심사·추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적용이 필요함. 각 영역의 심사기준을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영역 간 배점 조정  
⇒ 현재는 경력과 공익활동의 점수가 각 30점으로 동일한데, 사회복지 전문성을 고려할 때는 경력의 점수가 상향조정되어야 함.
- 심사위원 종합평가 점수 상향 조정  
⇒ 이력서 및 증빙서류로 파악할 수 있는 정량평가 점수가 평균 60점을 넘기기 쉽고, 심사위원 종합평가가 10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정성평가가 심사 결과에 크게 반영되지 않음. 심사위원 평가 점수 조정이 필요함.

※ 향후 예정사항

- 위원 제안사항을 참고, 내부검토를 거쳐 심사기준표, 추천후보자 제출서류를 포함한 관련 지침 수정 시 반영 예정.
- 하반기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후보자 모집 공고 추가 예정.

◆ 제2안건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9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원안 가결
9	연장 9	생계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li> <li>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li> <li>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기관(부서) 추천을 받은 경우</li> <li>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li> <li>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li> <li>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li> </ul>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2안-2번

- 미성년자 자녀의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했으면 함.  
⇒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구로 돌봄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동에 안내하겠음.
- 배우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급신청은 불가한지?  
⇒ 실종신고, 이혼 등 공적자료로는 확인이 되지 않아 배우자와의 관계단절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려우나, 위기상황 지속 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함.

2) 2안-3번

- 주거급여만 신청하고 생계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 요청  
⇒ 신청인의 나이가 젊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님. 1인 생계급여 기준은 54만원 이하로, 자활 등으로 연계하더라도 최소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생계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봄. 교정시설 출소자여서 취업의 어려움이 있으나, 취업이 되면 소득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3) 2안-7,8번

- 금융재산이 조사 중인 사례는 사유가 무엇인지, 기준이 있는지 확인 요청.  
⇒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는 연 6회 회신을 받도록 되어 있음. 상사회신이 아니며 긴급의료비 지원의 경우 신청 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지원 요청을 결정해야 하는 절차에 의해 금융재산 조사중인 상태에서 지원 후, 추후 결과에 따라 금융기준을 초과한 경우 환수 등의 절차로 진행하고 있음. 이번에 상정된 사례의 경우, 공적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사후 조사 결과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4) 2안-8번

- 해외 출국중인 자녀의 재산상황은 적용하지 않는지 확인 요청.  
⇒ 기초생활수급 자격 신청시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을 확인하고 있으나, 긴급지원의 경우 자녀의 소득여부는 지원 선정기준에 포함하지 않음. 현재는 수급 신청에 대한 의사나 위기상황 파악된 내용이 없음.

◆ 제3안건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7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및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li> <li>•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li> <li>•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li> </ul>	원안 가결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3안-6번

- 주거형태의 소유자와 아버지와의 세대분리, 부양의무자 확인 요청

⇒ 계모명의로 주거에 사용대차인 상황이며, 부와 계모 모두 신청인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실질적인 장애인 단독가구임.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경우 세대분리를 통한 장애인 단독가구로의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위 세대의 경우 1인 장애인 독거가구임.) 부는 부양의무자가 맞으며, 계부와 친모에 대한 부양의무자 면제 신청을 진행한 사례임.

◆ 제4안건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 제외 및 가족관계 해체 심의(안) : 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 해체</li> </ul>	가결

차기회의

◆ 2021년 제4차 전문위원회 서면심의

- 일시 : 2021년 4월 15일(목) 14:00, 온라인 비대면 회의 (ZOOM활용) 예정
- 사회복지법인 인천평복영락원 설립허가에 따른 외부이사 추천으로 정기회의 일정 변경하여 진행예정 (4/29 → 4/15)

# 2021년 제4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개요)

<b>회의일시</b>	2021.04.15.(목) 14:00 ~15:15	<b>진행방법</b>	온라인비대면 회의 (Zoom 화상회의)													
<b>주관부서</b>	연수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b>회의기록</b>	전담직원 정아영													
<b>참석자</b>	위원장 : 최윤희 / 부위원장 : 박진하 위 원 : 강근형, 김문수, 김혜미, 윤종만, 이규원 < 위원정수 8명 중 7명 참석 >															
<b>안 건</b>	◆ 제1안 긴급복지지원 및 인천형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제2안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제3안 기존 수급자에 대한 가족관계 해체 심의(안) ◆ 제4안 자활참여 조건불이행자 관리 심의(안) ◆ 제5안 사회복지법인 인천평복영락원 외부이사 추천 심의(안)															
<b>회의내용</b>	◆ 제1안건 긴급복지지원 및 인천형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6건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3">내용 및 요청사항</th> <th>결과</th> </tr> <tr> <th>대상</th> <th>심의사항</th> <th>종류</th> <th>위기사유</th> </tr> </thead> <tbody> <tr> <td>6</td> <td>긴급 5 인천형 1</td> <td>생계 의료</td> <td>                     •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td> <td style="text-align:center; color:blue;">원안 가결</td> </tr> </tbody> </table>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6	긴급 5 인천형 1	생계 의료	•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원안 가결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6	긴급 5 인천형 1	생계 의료	•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원안 가결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긴급복지지원 예산 관련 질의 • 3월 말 기준 예산 사용내역이 51%로 예산 소진에 대한 방안 답변 요청 ⇒ 현재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위기가정 발생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추가경정을 통해 증액이 가능함.																
◆ 제2안건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11건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3">내용 및 요청사항</th> <th>결과</th> </tr> <tr> <th>가구수</th> <th>가족수</th> <th>심의사항</th> <th></th> </tr> </thead> <tbody> <tr> <td>11</td> <td>18</td> <td>                     •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                      •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td> <td style="text-align:center; color:blue;">수정 가결</td> </tr> </tbody> </table>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11	18	•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 •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수정 가결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11	18	•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 •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수정 가결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2안-7번 • 65세 미만으로 부양의무자 조사가 필요한 사례임. 자녀의 부양이 예상되나, 자녀는 단절소명서 제출 등 부양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음. 남동구에서도 두 차																

레 반려된 사항이며,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대이나 단절을 주장하고 있음. 또한, 건강보험 피부험자 등록 등을 고려할 때 단절로 보기 어려움.

- 현재까지 조사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족 간 왕래여부 및 건강보험 피보험자 등록 취소 계기, 요양원 입장 등 관계단절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자녀와의 통화 등 재조사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상태를 파악하고 2안-7을 재상정하는 것으로 논의함.

⇒ 2안-7은 재조사를 통해 안건 재상정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결정을 보류하고, 그 외 10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2안건에 대해 수정안가결로 결정함.

◆ 제3안건 기존 수급자에 대한 가족관계 해체 심의(안) : 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1	1	• 가족관계 해체	

◆ 제4안 자활참여 조건불이행자 관리 심의(안) : 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1	1	• 타 참여자에 대한 폭력 및 폭언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활사업 재참여 제한	

1) 4안-1번

- 폭행사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및 소송처리 여부
  - ⇒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며, 형사고발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 민사소송은 모두 수급자인 상황으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가해자는 재범인 상황이며 잠재적 피해자 발생을 고려할 때 재참여 제한 뿐 아니라 통합사례관리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 ⇒ 정신과적 치료 및 상담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인이 격렬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음. 사회복지기금 등을 통한 심리정서사업 연계 및 정신과적 치료, 통합사례관리 등이 필요하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서비스 연계 등이 어려운 상황임.
- 자활참여 조건부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로 지원 변경 가능여부
  - ⇒ 현재 진단서를 제출하여 조건부과유예로 보호중인 상황이나, 더 이상 유예할 수 없으며, 일반수급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없음' 결과를 받아야 일반수급자로 지원이 가능함. 현재 근로능력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근로능력평가 역시 어려운 상황임.
- 추후 자활 외 지원 시에도 일정 회기 이상의 상담 참여 및 상담사 소견을 통한 재참여 가능 등의 조건부 참여에 대한 절차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가해자의 경우 자활지원담당자 및 통합조사담당자, 통합관리담당자 면담을 진행한 상태로, 추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서 제출 및 관련 상담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신과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제5안 사회복지법인 인천평복영락원 외부이사 추천 심의(안) : 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b>사회복지법인 인천평복영락원 외부이사 추천 심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후보자 : 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경자, 한종근, 김석겸, 김성신, 한영구, 황성주, 정미경, 김구일, 김기완, 김순영, 최윤봉</li> </ul> </li> <li>• 사회복지 경력 및 행정경험이 많은 후보군 우선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후보자 11명 중 희망분야보다는 신설법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력자 위주로 후보군 우선 선정</li> <li>⇒ 김석겸, 황성주, 김기완, 한종근, 한영구, 최윤봉 : 추천 후보자 선정</li> </ul> </li> <li>• 추가후보군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후보자 중 신규선임 불가사유 발생 고려하여 노인분야 우선순위 후보군을 추가후보군으로 선정</li> <li>⇒ 당경자, 정미경, 김순영 : 추가후보군 선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후보자 11명 중 6명 추천 (3배수 추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석겸, 황성주, 김기완, 한종근, 한영구, 최윤봉 순</li> </ul> </li> <li>2. 추가후보자 3명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경자, 정미경, 김순영 순</li> </ul> </li> </ul>

**차기회의**

◆ 2021년 제5차 전문위원회 회의  
- 일시 : 2021년 5월 27일(목) 14:00

## 2021년 제5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개요)

회의일시	1) 서면심의 : 2021.05.27.(목)	진행방법	1) 서면심의 : 방문수령					
	2) 대면회의 2021.05.27.(목) 14:00 ~15:30		2) 대면회의 : 연수구청 2층 영상회의실					
주관부서	연수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회의기록	전담직원 정아영					
참석자	1) 서면심의 부위원장 : 박진하 위 원 : 강근형, 김혜미, 이규원, 최성남  < 위원정수 8명 중 5명 참석 >							
	2) 대면회의 위원장 : 최윤희 / 부위원장 : 박진하 위 원 : 김혜미, 윤종만, 이규원, 최성남  < 위원정수 8명 중 6명 참석 >							
안 건	1) 서면심의 진행 ◆ 제1안 연수구푸드마켓1호점 운영사업자 선정심의(안)							
	2) 대면회의 진행 ◆ 제2안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제3안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제4안 기존수급자가 부양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및 기존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에 관한 심의(안) ◆ 제5안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외 결정 심의(안) ◆ 제6안 급여계좌 예외(제3자계좌) 설정 심의(안)							
회의내용	<b>◆ 제1안건 - 연수구푸드마켓1호점 운영사업자 선정심의(안) : 1건</b> ※ 대면회의 참석인원 6명 중 2명은 본 사업과의 이해관계자(운영기관 대표 및 운영기관 법인 운영위원)로 관련 안건 심의에 있어 제척됨에 따라 심의의결 조건인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성원이 이뤄지지 않아 (8명 중 4명 참석) 서면회의로 변경하여 심의 진행함. (8명 중 5명 참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 및 요청사항</th> <th style="text-align: center;">결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b>연수구푸드마켓1호점 운영사업자 선정심의(안)</b></td> <td style="text-align: center;"><b>신청 기관 선정</b></td> </tr> <tr> <td>                     연수구푸드마켓1호점 현 운영사업자(세화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의사 철회에 따른 신규 운영사업자(신청기관 :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선정심의 의뢰                      • 사 업 명 : 연수구푸드마켓1호점 운영                      • 신청기관 :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 요청사항 :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심의                 </td> <td style="text-align: center;"><b>(평균 88.0점)</b></td> </tr> </tbody> </table>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b>연수구푸드마켓1호점 운영사업자 선정심의(안)</b>	<b>신청 기관 선정</b>	연수구푸드마켓1호점 현 운영사업자(세화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의사 철회에 따른 신규 운영사업자(신청기관 :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선정심의 의뢰 • 사 업 명 : 연수구푸드마켓1호점 운영 • 신청기관 :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 요청사항 :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심의	<b>(평균 88.0점)</b>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b>연수구푸드마켓1호점 운영사업자 선정심의(안)</b>	<b>신청 기관 선정</b>							
연수구푸드마켓1호점 현 운영사업자(세화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의사 철회에 따른 신규 운영사업자(신청기관 :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선정심의 의뢰 • 사 업 명 : 연수구푸드마켓1호점 운영 • 신청기관 :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 요청사항 :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심의	<b>(평균 88.0점)</b>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토의사항

1) 현재 연수구푸드마켓1호점 직원의 고용승계여부

⇒ 모집공고문 내 현재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고시하고 신청기관에도 안내함.

2) 운영 중 사고발생 시 대처관련 평가 근거

⇒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에 대처계획 작성함. 작성된 계획 근거로 심의위원 주관적 평가로 심사표 작성

※ 심의 결과 평균 88.0점으로 평균 60점 이상에 해당, 신청기관인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를 운영사업자로 선정함.

◆ 제2안건 -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5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원안 가결
5	환수 2 연장 2 적정성 1	생계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li> <li>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li> <li>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li> <li>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li> </ul>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2안 1, 2번

• 환수면제 (금융재산 초과 건) 선지급 시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할 때 환수필요 시 동의 각서를 사전에 수령할 수 있는지 설명 요청

⇒ 사후조사결과에 따른 환수 안내는 항상 안내하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법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각서 수령이 불가하며 임의로 받을 수는 없음.

• 환수거부 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청

⇒ 환수금액 납부에 대한 공문 발송 후 법적조치를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음.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부정수급자로 고소고발 진행이 가능하나, 긴급지원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명령까지 이루어질 만큼의 고의성이 짙은 사례는 없었음.

• 금융재산 조사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 설명 요청.

⇒ 금융조사는 연 6회, 2개월 단위로 조사가 진행되고 그 회신 결과 또한 2개월 단위로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으로 인해 금융조사를 건별로 진행할 수 없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2) 2안 4번 : 주소지 정정 (연수2동 → 연수1동)

◆ 제3안건 -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14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1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및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li> <li>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li> <li>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li> </ul>	

※ 3안-4번의 경우 조사결과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보기 어려움'으로 신규수급자 보장결정 부결로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가족관계해체 불인정으로 가결 처리함.

◆ 제4안건 - 기존수급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및 가족관계 해체 심의(안) : 4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4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수급자가 부양 받을 수 없음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에 대한 심의</li> <li>가족관계 해체에 관한 심의</li> </ul>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4안 3, 4번

- 가족관계 해체가 아닌 상태로 수급자 보호가 가능한지 설명 요청  
⇒ 부양의무자가 신고는 되어 있었으나, 부양의무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으나 확인조사 과정에서 소득증가로 '부양능력있음'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족관계 해체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의안건 상정함.
- 초기 신청 시 서류접수 결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확인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 요청  
⇒ 서류 상 서명이 되어 있고, 신청인이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를 주장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소득이 낮아 '부양능력없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세한 사항을 신청 당시 파악하기 어려움.
- 가족관계 해체 조사 과정에서 최근 1년간의 자료로 평가하는 근거 설명 요청  
⇒ 조사팀에서도 최근 1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해체를 조사하는 기간의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음. 단절보다 해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준을 예전보다 낮추어 평가하고 있음.
- \* 전문위원회 위원 공통 의견 : 최근 1년간의 자료는 법망을 빠져나가기에 긴 기간이 아니라고 봄. 특히 해외 출입국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최근 1년으로 보기엔 의미가 없는 조사기간이라고 봄.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고려할 때 관련 조사 시 기간을 길게 보았으면 함.

◆ 제5안건 -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외 결정 심의(안) : 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수정안 가결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장비용 징수제외</li> </ul>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5안 1번

- 소득평가액 점검 요청  
⇒ 소득평가액은 6,461,237원으로 회의자료 금액 정정
- 2020년 12월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수제외(면제) 결정된 사유 설명 요청  
⇒ 행정사고로 우편물 발송 누락, 보장비용 징수 소멸시효 만료 등으로 인함.

- 보장비용 징수 제외 뿐 아니라 가족관계 해체 심의가 필요한 사례로 판단됨. 계속 보장비용 징수 제외 심의를 받을 계획이 아니라면 가족관계 해체 인정을 통한 징수면제 대상으로 심의 신청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견 및 설명 요청
  - ⇒ 보장비용 징수제외 면제로 심의를 상정하면 가족관계 해체까지 처리된다고 판단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음. 가족관계해체 심의는 통합관리팀에서 진행하고 있어 회의 참석하여 진행하기로 함.
  - ⇒ 통합관리팀 의견 역시, 가족관계 해체 심의도 진행이 되어야 보장비용징수도 추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심의하는 것으로 요청함. 추후 생활보장팀과 협의하여 선보장 후징수 사례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과 가족관계 해체 인정 사례 파악하여 심의상정하기로 함.
- ※ 토의 결과 5안-1번은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가족관계 해체로 인정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기로 합의함.

◆ 제6안건 - 급여계좌 예외(제3자계좌) 설정 심의(안) : 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1	1	• 제3자계좌 (동행정복지센터)로 급여계좌 등록에 관한 심의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6안 1번

- 치매 및 장애판정 불가 사유 및 무연고자 지원 절차 설명 요청
  - ⇒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로, 의사능력없음을 판정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다가 사망 시 무연고자로 지원함.
  - ⇒ 무연고자 사망 시, 간단한 장례의식 진행 후 화장처리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망처리한 병원에서 장례업체 등을 통해 진행 후 구에 비용을 청구함.
- 급여관리자가 정확히 동행정복지센터인지, 요양병원 관계자인지 정확한 절차 설명 요청
  - ⇒ 동행정복지센터 계좌로 수급비를 입금 받은 후 병원비 청구금액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병원 관리자가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동행정복지센터에 병원비 지출 및 영수증 전달, 동에서 급여관리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임.
- 병원비 초과금액과 이전 수급비 이용가능여부 등에 대한 설명 요청
  - ⇒ 병원비가 초과될 경우 차액을 이월하여 청구하기로 하였으며, 누적된 수급비는 급여계좌 변경을 통해 동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 미납액 지불 가능함.

차기회의

- ◆ 2021년 제6차 전문위원회 회의
  - 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10:00, 연수구청 3층 대상항실 대면회의 예정
  -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사업 심의일정(6.21~6.22 한)으로 인해 6차 정기회의 일정 변경하여 진행예정 (6/24 → 6/21)

# 2021년 제6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개요)

<b>회의일시</b>	2021.06.21.(월) 10:00 ~11:40	<b>진행방법</b>	연수구청 3층 대상환실													
<b>주관부서</b>	연수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b>회의기록</b>	전담직원 정아영													
<b>참석자</b>	위원장 : 최윤희 / 부위원장 : 박진하 위 원 : 김문수, 김혜미, 윤종만, 이규원, 최성남 < 위원정수 8명 중 7명 참석 >															
<b>안 건</b>	◆ 제1안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제2안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제3안 기존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에 관한 심의(안) ◆ 제4안 「한시생계지원 신청대상자 지급」 적정성 심의(안)															
<b>회의내용</b>	◆ 제1안건 -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3건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3">내용 및 요청사항</th> <th>결과</th> </tr> <tr> <th>대상</th> <th>심의사항</th> <th>종류</th> <th>위기사유</th> </tr> </thead> <tbody> <tr> <td>3</td> <td>연장 3</td> <td>생계 주거</td> <td>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임차료 연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td> <td>원안 가결</td> </tr> </tbody> </table>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3	연장 3	생계 주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임차료 연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원안 가결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3	연장 3	생계 주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임차료 연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원안 가결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1안 1번 • 교정시설 출소 시 지역 내 지원체계가 있는지 설명 요청 ⇒ 특별히 구에서 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음. 보호관찰 등 교정 쪽 지원사업은 있으나 구 차원에서는 지원하지 않음. 법무부 산하 갯생원 등 갯생프로그램은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2) 1안 2번 • 주거비 금액과 지급절차 설명 요청 ⇒ 1인가구 지원금은 387,000원 정액 지급하며 수급자인 경우 월세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함. 주거비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공사나 주택관리공사 관할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시에는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측에 직접 지원하고 있음.																
◆ 제2안건 -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13건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3">내용 및 요청사항</th> <th>결과</th> </tr> <tr> <th>가구수</th> <th>가족수</th> <th>심의사항</th> <th></th> </tr> </thead> <tbody> <tr> <td>13</td> <td>16</td> <td>                     •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및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                      •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                      •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td> <td>원안 가결</td> </tr> </tbody> </table>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13	16	•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및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 •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 •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원안 가결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13	16	•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및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 •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 •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원안 가결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2안 1, 5번

- 연세가 많은 신청인의 경우 수급신청이 늦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 설명 요청. 사각지대 발굴에 의한 것인지 놓치고 있던 사례는 아닌지 확인 요청.  
⇒ 신청인의 건강이 양호하여 근로를 계속하며 축적한 재산을 최대한 사용한 후에 신청하거나, 일부의 경우 동거인 등과의 관계 등을 늦게 신청한 경우가 있었음. 사각지대인 경우도 있으나, 1번의 경우는 부양의무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할 수 있게된 세대이기도 함.
- 고령의 경우 부양의무완화에도 안건상정이 이뤄져야 하는지 설명 요청.  
⇒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의 조사 진행거부 등의 경우는 관계단절을 확인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하게 됨.
- 2안 5번의 자녀에 첫째자녀 표기에 대한 설명 요청  
⇒ 부양의무자 정보가 빠진 사례로 실제 아들은 3명임. 2명의 아들은 부양능력이 없으며 첫째 아들은 부양능력이 있으나 부양거부하게 됨에 따라 상정함.

2) 2안 11번

- 건강상태가 안 좋은 사례로 보이는데 신청이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설명 요청.  
⇒ 2019년에 수급신청을 한 사례로 주변 신고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하고 잠시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이후 알콜중독과 당뇨합병증 등으로 고사가 심해지면서 자활사업도 참여가 어려워짐. 자녀들이 21년 3월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신청하지 못하였음. 현재도 관계단절로 보기에 완전 단절관계로 볼 수는 없으나 가정폭력 정황, 사례관리 내용 등의 일관된 내용진술을 고려할 때 신청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입원상태가 자의인지, 사례관리 중인지 설명 요청.  
⇒ 당뇨로 인해 119 통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하였으며, 알콜중독은 본인이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음. 2019년부터 연수2동 사례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녀들과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응급입원비 지원이 전부였음.
- 알콜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치료프로그램 수반이 필요함. 사례관리로 평생 유지할 수 없는 점 고려할 때 수급신청 뿐 아니라 치료지원도 필요하다고 봄.  
⇒ 알콜중독은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운 면이 있음. 입원을 하기 위해서도 수급신청이 이뤄져야 입원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자기인정이 제일 중요한 사례로 자녀들의 트라우마와 부담감을 고려해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도 반영했으면 함.

※ 2안 11번 사례의 경우 자녀가 많고 완전한 가족관계 단절로 보기는 어렵지만 부의 오래된 폭력과 이로 인한 트라우마 등을 고려할 때 자녀보다는 지역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결함.

◆ **제3안건 - 기존 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 심의(안) : 4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4	4	• 가족관계 해체에 관한 심의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3안 4번

- 부양거부 사례로 보이는데 부결 시 발생하는 문제 설명 요청
  - ⇒ 자녀가 부양능력은 있으나 부양할 만큼 했으며, 신청인 부양으로 인해 자녀의 가족관계도 해체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며 부양기피로 안건으로 상정함. 현재는 수급지원을 받고 있으며, 딸의 재산조사 결과 부양가능으로 파악되었음. 월 15만원(실비보험료) 지우너하고 있었으나 보험도 해지된 상태이며 현재는 지원이 전혀 없음.
  - ⇒ 부결 시 의료급여 중지되며 별도 징수금액은 없으나 치료가 필요한 사례로 의료급여가 중지되면 병원비 부담이 있는 가구임.
- 징수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금액은 산정되어 있는지 설명 요청
  - ⇒ 확인조사 기간에 확인한 사항으로 현재는 징수금액은 별도로 없음.
- 의료급여 대상자의 실비보험 필요여부와 보험해지 환급금 발생분 설명 요청
  -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비급여 보험료에 대한 발생분은 지불해야 함. 해지금액은 확인해보지 않았으나 2년 이내에 해지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해지환급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함.

◆ 제4안건 - 「한시생계지원 신청대상자 지급」 적정성 심의(안) : 91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위기사유	원안 가결
991	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가구	•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 기준은 얼마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인지 설명요청
  - ⇒ 1개월 기준으로 5월 기준으로 파악된 사항이며, 직접 제출한 사항과 실제 사항이 맞지 않는 경우는 가상으로 신고한 금액과 소득인정액 조사금액의 차이로 수급지원, 국민연금 등 공적급여 수령여부와 가구수에 대한 산정금액 차이 등으로 차액발생함.
- 소득감소분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해야 하는지 설명 요청
  - ⇒ 0으로 기록된 사람들은 천원단위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0으로 입력된 사례이기도 하며, 현재 안건으로 상정된 911건은 모두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이므로 소득조회 결과 지원 가능한 대상으로 파악된 점 고려 요함.
  - ⇒ 원래 취지와 홍보 시에는 소득감소에 대한 지원이 맞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냥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전부 지원하고자 함. 지자체장의 재량,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하라는 점 고려 요함.
- 월소득과 연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설명 요청
  - ⇒ 본인이 신청서 작성 시 연봉으로 계산한 경우도 있음. 실질적으로 구에서 검토한 소득조회에서는 문제없이 해당자에 포함된 경우들임. 직접 작성 시 연봉으로 작성했다라도 기준에 포함되면 지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제출 시 접수자가 명확히 확인을 했어야 소득감소액 및 현재 소득 등을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 ⇒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면을 고려해서 심의 진행을 요청함.</li> <li>• 자활사업의 참여자의 경우 일수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하였는지 설명 요청. ⇒ 기준조건에 맞는다면 가능함. 실제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 금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li> <li>• 연수구 목표인원과 타 구와의 지원 수준 설명 요청 ⇒ 연수구는 4300건의 목표로 진행하였으며 4142건 달성함. 부평→남동→미추홀→서구→계양, 연수 순으로 지원인원이 차이가 있음. 수급자 대비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시에서 연수구는 더 많이 홍보하고 지원하라고 4,300건을 목표로 세워서 안내함.</li> <li>• 소득감소액이 0원인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봄. 기준 대상이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인데 감소액이 없다면 지원대상이 아니어야 함. ⇒ 본인의 소득은 원래 없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천원 이하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 0원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대상이라고 봄.</li> </ul> <p>※ 토의 결과 4안건은 지원의 취지와 심의대상자의 명확한 정보제공(천원 이하 소득감소여부 확인 등)등 심의자료를 추후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유사 심의 진행 시, 명확한 자료로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가결처리 함.</p>
<p><b>차기회의</b></p>	<p>◆ 2021년 제7차 전문위원회 회의 - 일시 : 2021년 7월 22일(목) 14:00, 연수구청 2층 영상회의실 대면회의 예정</p>

-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2021년 제7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b>회의일시</b>	2021.07.22.(목) 14:00 ~15:15	<b>진행방법</b>	온라인비대면 회의 (Zoom 화상회의)															
<b>주관부서</b>	연수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b>회의기록</b>	이지영															
<b>참석자</b>	위원장 : 최윤희 / 부위원장 : 박진하 위 원 : 김문수, 김혜미, 윤종만, 최성남 < 위원정수 8명 중 6명 참석 >																	
<b>안 건</b>	◆ 제1안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제2안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제3안 기존 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에 관한 심의(안) ◆ 제4안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반환 면제 심의(안)																	
<b>회의내용</b>	◆ 제1안건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9건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내용 및 요청사항</th> <th>결과</th> </tr> <tr> <th>대상</th> <th>심의사항</th> <th>종류</th> <th>위기사유</th> <th rowspan="2">원안 가결</th> </tr> </thead> <tbody> <tr> <td align="center">9</td> <td align="center">긴급 8 인천형 1</td> <td align="center">생계 주거 의료</td> <td>                     • 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차료 연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td> <td align="center">원안 가결</td> </tr> </tbody> </table> <p>☞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p> <p>1) 긴급복지지원 예산 관련 질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13억 예산이 거의 소진되어 추후 증액에 대한 답변 요청                      ⇒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위기가정 발생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추가 배정이 계속되고 있음. 인천형도 2억 내외 추후 증액될 예정임.</li> </ul> <p>2) 1안-1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뱅크 등의 지원 가능여부                      ⇒ 관련 욕구가 없어 해당 심의만 진행하고자 함.</li> </ul> <p>3) 1안-2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 가구에 대한 사후연계 및 지속적인 관찰과 집중관리가 필요해 보임.                      ⇒ 한부모 시설 입소 고려중임.</li> </ul> <p>4) 1안-7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국적의 화교로 한국에서 출생하였고,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없음. 대사관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외국인 재등록 절차 진행 중이며, 사회보장번호 부여도 고려하고 있음. 외국인 지원제도 미비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 자임.</li> </ul>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원안 가결	9	긴급 8 인천형 1	생계 주거 의료	• 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차료 연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원안 가결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원안 가결														
9	긴급 8 인천형 1	생계 주거 의료	• 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차료 연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원안 가결													

⇒ 대사관 등 관련 기관에 협조 및 지원 요청하거나, 시간이 걸리지만 간이귀화절차 진행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제2안건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16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1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li> <li>•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를 일반재산에 반영</li> <li>•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li> </ul>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2안-12번

• 2안-13번과 동일 가구임. 2개의 심의 중 하나라도 부결되면 보호 및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신청인의 부모와 자녀는 조손가정으로 보호받고 있었으나, 신청인 출소 후 가구원 추가 보장이 필요함.

2) 2안-13번

• 차량 멸실 인정은 1대까지 가능하나 신청인의 경우 차량이 4대라 심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함.  
 • 차량 말소 진행할 경우 멸실 사실 인정서 필요여부  
 ⇒ 다른 보장을 받기 위해 재심의 필요함. 차량 말소 등의 과정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제3안건 기존 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에 관한 심의(안) : 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 해체</li> </ul>	

◆ 제4안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반환 면제 심의(안) : 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비용 반환 면제</li> </ul>	

1) 4안-1번

• 신청인의 아버지는 고혈압(만성질환)이 있고, 신용불량자로 취직이 어려움. 신청인이 부모와 함께 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나 8월에 실업급여 반영으로 주거급여 중지 예정임.

◆ 기타의견

- 6차 전문위원회 보완자료 관련: 심의 기준이나 근거 자료 먼저 공유 필요
- 온라인회의의 경우 참석 전 마이크 테스트 필요

차기회의

- ◆ 2021년 제8차 전문위원회 회의
- 일시 : 2021년 8월 26일(목) 14:00

-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2021년 제8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b>회의일시</b>	2021.08.26.(목) 14:00 ~15:00	<b>진행방법</b>	화상회의 (Zoom 활용)															
<b>주관부서</b>	연수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b>회의기록</b>	이지영															
<b>참석자</b>	위원장 : 최윤희 / 부위원장 : 박진하 위 원 : 강미경, 김문수, 김혜미, 윤종만, 최성남 < 위원정수 8명 중 7명 참석 >																	
<b>안 건</b>	◆ 제1안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제2안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제3안 기존 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에 관한 심의(안)																	
<b>회의내용</b>	◆ 제1안건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9건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내용 및 요청사항</th> <th>결과</th> </tr> <tr> <th>대상</th> <th>심의사항</th> <th>종류</th> <th>위기사유</th> <th rowspan="2">원안 가결</th> </tr> </thead> <tbody> <tr> <td align="center">9</td> <td align="center">긴급 9</td> <td align="center">생계 의료</td> <td>                     • 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차료 연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td> <td align="center">원안 가결</td> </tr> </tbody> </table> <p>☞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p> <p>1) 1안-1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양의무자 조사 문제로 인해 어머니의 경우 수급자가 아니며, 자녀 1인만 수급자(별도가구 특례)로 보호 받는 상황임.</li> </ul> <p>2) 1안-2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양의무자의 소득초과로 생계급여 중지되었으며, 가족관계 해체상황은 아님. 추후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 재신청 안내함.</li> <li>'한시간 한아름 사업' 연계하여 의료비 1회 지원함.                      ⇒ 연수구 공무원이 초과근무 1시간 수당을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틈새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고 있음. 현재 167명이 기부에 참여하며, 연간 1,800만원 정도 기금이 모이고 있음. 작년도 20가구 지원함.</li> </ul>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원안 가결	9	긴급 9	생계 의료	• 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차료 연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원안 가결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원안 가결														
9	긴급 9	생계 의료	• 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차료 연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원안 가결													

◆ 제2안건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14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14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li> <li>•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li> </ul>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2안-6번

- 퇴원 후 남동생의 지원을 받을 예정임.
- 2) 복지대상자 발굴 및 도움 요청 관련 질의
- 오랜 기간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발굴되는지 스스로 방문하는지 여부  
⇒ 스스로 도움 요청 하는 경우 많음. 교정시설 퇴소 시 긴급지원 신청 및 추후 수급 보호를 받는 경우나 맞춤형복지팀 통해 연계되는 경우 있음.

◆ 제3안건 기존 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에 관한 심의(안) : 2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 해체</li> </ul>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질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달라지는 사항 여부  
⇒ 정부 지침으로 지자체 별로 달라지는 사항은 없음. 연소득 1억 이상, 재산 9억 이상 부양의무자 있을 경우 수급 보호 제외됨.

차기회의

- ◆ 2021년 제9차 전문위원회 회의  
- 일시 : 2021년 9월 30일(목) 14:00

-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2021년 제9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b>회의일시</b>	2021.09.30.(목) 14:00 ~15:25	<b>진행방법</b>	화상회의 (Zoom 활용)													
<b>주관부서</b>	연수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b>회의기록</b>	이지영													
<b>참석자</b>	위원장 : 최윤희 / 부위원장 : 박진하 위 원 : 강미경, 김문수, 김혜미, 윤종만, 최성남 < 위원정수 8명 중 7명 참석 >															
<b>안 건</b>	◆ 제1안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제2안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제3안 『연수e웃나눔』사례 선정 심의(안)															
<b>회의내용</b>	◆ 제1안건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7건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내용 및 요청사항</th> <th>결과</th> </tr> <tr> <th>대상</th> <th>심의사항</th> <th>종류</th> <th>위기사유</th> </tr> </thead> <tbody> <tr> <td>7</td> <td>긴급 6 인천형 1</td> <td>생계 의료</td> <td>                     • 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단수단가스단전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td> <td>원안 가결</td> </tr> </tbody> </table>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7	긴급 6 인천형 1	생계 의료	• 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단수단가스단전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원안 가결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7	긴급 6 인천형 1	생계 의료	• 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단수단가스단전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원안 가결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1안-6번 • 후견인 지정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임. ⇒ 기초생활수급 신청이나 장애인등록은 되어있지 않음.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사회생활은 가능하여 후견인 지정까지는 불필요해 보임. 필요할 경우 후속 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임.																
◆ 제2안건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16건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내용 및 요청사항</th> <th>결과</th> </tr> <tr> <th>가구수</th> <th>가족수</th> <th>심의사항</th> <th></th> </tr> </thead> <tbody> <tr> <td>16</td> <td>20</td> <td>                     •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                 </td> <td>원안 가결</td> </tr> </tbody> </table>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16	20	•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	원안 가결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16	20	•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	원안 가결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기타의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변동사항 여부  
⇒ 완전한 폐지는 아니며 연소득 1억원, 재산 9억원의 기준이 남아있음.  
생계급여만 기준 완화되었고,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여전히 적용됨.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적용 대상자 신청 건수 소폭 증가 예상됨.
-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탈락된 가구 비율 문의  
⇒ 확인 후 다음 회의에서 설명예정.

◆ 제3안건 『연수e웃나눔』사례 선정 심의(안) : 3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신청분야	심의사항	원안 가결
3	생활비	• 대상자 선정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 1) 세부사항 설명
  - 신청 건은 모두 심의 진행
  - 1년 이내 동일항목 신청 불가
  - 비급여 의료비도 인천지역 내에서 소비쿠폰 형식으로 사용가능 (다른 지역 사용 불가)
  - 개인 모금한도(150만원 이내), 테마사업 모금한도(1,000만원 이내)
- 2) 신청금액 논의
  - 산출내역을 명확히 신청하도록 안내 필요하며, 필요 시 재접수 고려.  
⇒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음.
  - 신청 금액을 조정하며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개별 신청금액을 모금한도로 확정함.
- 3) 탈락 기준 점수 논의
  - 기준 마련 필요  
⇒ 영구임대 거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최저점수 58점이므로 탈락 기준을 60점 미만으로 확정함.
- 4) 3안-2번
  - 신청서와 회의자료의 소득 불일치  
⇒ 연봉액과 실수령액 차이임.

차기회의

- ◆ 2021년 제10차 전문위원회 회의
-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 14:00

# 2021년 제10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b>회의일시</b>	2021.10.28.(목) 14:00~15:00	<b>진행방법</b>	화상회의 (Zoom 활용)													
<b>주관부서</b>	연수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b>회의기록</b>	이지영													
<b>참석자</b>	위원장 : 최윤희 위 원 : 김문수, 김혜미, 윤종만, 최성남 < 위원정수 7명 중 5명 참석 >															
<b>안 건</b>	◆ 제1안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제2안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제3안 민관협력사업 선정 및 배분요구 심의(안)															
<b>회의내용</b>	◆ 제1안건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8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3">내용 및 요청사항</th> <th>결과</th> </tr> <tr> <th>대상</th> <th>심의사항</th> <th>종류</th> <th>위기사유</th> </tr> </thead> <tbody> <tr> <td>7</td> <td>긴급 7 인천형 1</td> <td>생계 주거 의료</td> <td>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단수, 단가스, 관리비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차료 연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원안 가결</td> </tr> </tbody> </table>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7	긴급 7 인천형 1	생계 주거 의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단수, 단가스, 관리비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차료 연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원안 가결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7	긴급 7 인천형 1	생계 주거 의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단수, 단가스, 관리비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차료 연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원안 가결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1안-2번 • 미추홀구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돌봄서비스 진행여부 ⇒ 타지역 대상으로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같이 거주하는 다른 형제의 도움 받고 있음.  2) 1안-3번 • 긴급지원 등의 일시적 지원 뿐 아니라 장기적 안정 위해 사례관리 필요 ⇒ 적극 검토할 예정임.  3) 1안-4번 • 기초수급자 신청을 거부하고 자립의지가 강하나 당장 취업이 어려우므로 자활센터 연계 및 취업정보 제공 필요 ⇒ 차상위 대상자까지 자활센터 연계가능하며, 일반 대상자는 불가함. 40대 초반으로 남동공단 근무이력이 있고, 현재도 근로가 가능해 보여 긴급지원 이후 노동부 취업정보센터 연계 및 차상위 신청 등 검토 예정임.																

4) 기타의견

- 대상자별 긴급지원 연장횟수 표기 필요  
⇒ 앞으로 반영하겠음.

◆ 제2안건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13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13	20	•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2안-12번

- 단순 생계비 지원 뿐 아니라 유관기관 협력 필요  
⇒ 시설에서 적응을 못해 퇴소하여 혼자 월세집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며, 주변에 도움 줄 사람이 없음. 퇴소시기 및 학교 입학여부 파악되지 않음. 18세 미만으로 친척이 없을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법정후견인이 생활 전반 도움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음. 추후 사례관리 등 지원 예정임.

2) 기타의견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심의사항 변동여부  
⇒ 완전한 폐지는 아니며 연소득 1억원, 재산 9억원의 기준이 남아있음. 생계급여만 기준 완화되었고,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여전히 적용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으며, 금융재산조사 진행안함. 따라서 생계급여 신청자 일부와 의료급여의 경우 심의 필요함.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변동사항  
⇒ 신청 건수 증가하였으며, 기존 신청자도 10월 기준으로 소급 적용됨.

◆ 제3안건 민관협력사업 선정 및 배분요구 심의(안) : 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운영주체	요구사업비	심의사항	원안 가결
연수구푸드마켓 1호점	15,000천원	• 연수구 청년드림마켓 운영 지원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청년드림마켓 세부사항 설명

- 푸드마켓 내 설치
- SNS 홍보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가구주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신청자에게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 5년 주기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청년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기획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가구수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취업, 임대료 부담, 생필품 및 식료품 구입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최대 200가구이내 지원으로 시범운영하였고, 20가구 정도 이용함

	<p>2) 후원금 모금 관련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는 모금 및 배분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모금기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기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됨</li> <li>• 집행잔액 및 이월금에 대한 세부사항 정리 필요 ⇒ 동특화사업, 김장한마당 사업 진행 후 남은 금액은 이월됨. 추후 정리 예정임.</li> </ul> <p>3) 심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드림마켓 사업 주체인 지역자활센터장 최윤희 위원은 본 심의에서 제외</li> <li>• 후원금 15,000천원 배분에 대한 심의 진행</li> </ul>
<p><b>차기회의</b></p>	<p>◆ 2021년 제11차 전문위원회 회의</p> <p>-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14:00</p>

# 2021년 제11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개요)

회의일시	대면회의 2021.11.25.(목) 14:30 ~16:00	진행방법	대면회의 (연수구청 2층 영상회의실)															
주관부서	연수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회의기록	전담직원 김지혜															
참석자	1) 대면회의 위원장 : 최윤희 위 원 : 강미경, 김혜미, 윤종만, 김문수 < 위원정수 7명 중 5명 참석 >																	
안 건	1) 대면회의 진행 ◆ 제1안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제2안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제3안 기존 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 심의(안) ◆ 제4안 보장비용 징수 제외 결정 심의(안) ◆ 제5안 민관협력사업 선정 및 배분요구 심의(안)																	
회의내용	◆ 제1안건 -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9건 <table border="1" data-bbox="320 1429 1426 1733"> <thead> <tr> <th colspan="4">내용 및 요청사항</th> <th>결과</th> </tr> <tr> <th>대상</th> <th>심의사항</th> <th>종류</th> <th>위기사유</th> <th rowspan="2">원안 가결</th> </tr> </thead> <tbody> <tr> <td>5</td> <td>환수면제 1 연장 8</td> <td>생계 의료</td> <td>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코로나19)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td> <td></td> </tr> </tbody> </table>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1안 1번 • 수급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 사용 불가 이유 설명 요청 ⇒ 현재 부모님과 연락이 어렵고 본인 명의 통장임에도 통장 개설 여부에 대해 본인이 인지하고 있지 못했음. 하지만 금융실명제로 인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도 중지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지하였음. 2) 1안 6, 7번 • 수급자 경제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 요청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원안 가결	5	환수면제 1 연장 8	생계 의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코로나19)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원안 가결														
5	환수면제 1 연장 8	생계 의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코로나19)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 5안) 긴급복지지원법 규정상 월세 상한선 명시가 없기 때문에 지원 문제없음.
- 6안) 주식 관련 전산 오류에 관한 추가 서류 증빙 완료.

3) 1안 5, 10번

-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은 대상들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지 설명 요청  
⇒ 일자리정책과 국·시비 일반 근로 사업이 있음. 하지만 사업 진행 전 대상이 발굴되면 연계가 가능하지만 사업 진행 이후에는 연계가 어려움. 또한 희망 근로사업의 경우도 관련 절차가 있기 때문에 중간 연결은 어려움.

4) 1안 14번

- 수급자 경제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 요청  
⇒ 대상자 이혼 전 상황으로 아직 재산 분리 되지 않음.

5) 1안 8, 9번

- 수급자 의료비 관련 설명 요청  
⇒ 심의 통과 후 의료비 지원 가능. 또한 부족한 부분은 다양한 자원 및 후원 연계 가능.

◆ 제2안건 -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25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2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li> <li>•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li> </ul>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2안 5번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추가 설명 요청  
⇒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에게 자활사업을 참여 조건으로 안내하고 있고 젊은 층의 대상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함.

2) 2안 6, 12번

- 조건부 수급이 불가한 상황인지 질의  
⇒ 근로능력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수급이 진행되고 있음.

3) 2안 18번

- 가구원의 부양능력에 대한 질의  
⇒ 자녀 혼자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아 기초의료급여 수급을 지원하고자 함.

4) 기타의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실효성 질의  
⇒ 현재 신청 건수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

◆ 제3안건 - 기존 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 심의(안) : 3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3	4	• 가족관계 해체에 관한 심의	

◆ 제4안건 - 보장비용 징수 제외 결정 심의(안) : 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부결
1	1	•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제외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5안 1번

- 수급자 및 가족 구성원 관계에 대한 추가 설명 요청

⇒ 현재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고 자녀 양육은 아내가 맡고 있음. 수급자는 현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개인 통장으로 수급 받은 상황임.

- 보장비용 징수 시 수급자 배우자가 처할 상황이 우려되어 현장 조사 요청

⇒ 현장 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만나 상황 설명을 들었고 이후에 이혼을 통한 가구 분리가 될 경우 배우자가 따로 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

※ 토의 결과 4안-1번은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사실을 은닉했기 때문에 보장비용 징수 제외에 대하여 부결하기로 합의함.

◆ 제5안건 - 민관협력사업 선정 및 배분요구 심의(안) : 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운영주체	요구사업비	심의사항	원안 가결
연수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41,671천원	• 2021 연수구 김장한마당 운영 지원	

☞ 위원별 의견 및 담당부서 답변

1) 김장한마당 운영 관련

- 코로나 19로 인해 운영 방법이 변경된 후 지원 범위에 대한 질의

⇒ 작년 대비 운영비, 지원 세대수 증가.

⇒ 각 동에서 새마을 부녀회, 주민자치회, 협의체 등에서 따로 김장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명단을 받아 관리함.

◆ 기타의견

- 연수나눔행사가 이음카드 팝업 및 구청 사이트에 홍보될 수 있도록 요청

차기회의

◆ 2021년 제12차 전문위원회 회의

- 일시 : 2021년 12월 23일(목) 14:00, 연수구청 2층 영상회의실 대면회의 예정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진행 될 수 있음.

# 2021년 제12차 전문위원회 서면심의 회의록 개요

회의일시	2021.12.22.(수)~12.23(목)	진행방법	서면심의													
주관부서	연수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회의기록	김지혜													
참석자	위원장 : 최윤희 / 부위원장 : 박진하 위 원 : 강미경, 김문수, 김혜미, 윤종만, 최성남 < 위원정수 7명 중 7명 참석 >															
안 건	◆ 제1안 : 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제2안 :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제3안 : 기존 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 심의(안) ◆ 제4안 : 민관협력사업 선정 및 배분요구 심의(안) ◆ 제5안 : 『연수e웃나눔』사례 선정 심의(안) ◆ 제6안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심의(안)															
회의내용	◆ 제1안건-긴급복지지원 심의(안) : 11건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3">내용 및 요청사항</th> <th>결과</th> </tr> <tr> <th>대상</th> <th>심의사항</th> <th>종류</th> <th>위기사유</th> </tr> </thead> <tbody> <tr> <td>11</td> <td>연장 10 환수면제 1</td> <td>생계 의료</td> <td>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 단수, 단가스, 단전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의 소득감소 및 건강보험료 체납                 </td> <td>원안 가결</td> </tr> </tbody> </table>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11	연장 10 환수면제 1	생계 의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 단수, 단가스, 단전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의 소득감소 및 건강보험료 체납	원안 가결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대상	심의사항	종류	위기사유													
11	연장 10 환수면제 1	생계 의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 단수, 단가스, 단전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의 소득감소 및 건강보험료 체납	원안 가결												
☞ 서면심의 의견 및 답변																
심의의견 및 담당부서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퇴원후 대상자 생계 지원 계획 수립 필요 (자활 참여 등)                      -&gt; 대상자 퇴원 이후, 동의를 얻어 사례관리 대상자 의뢰 및 선정 예정이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필요 시, 자활 참여 및 정신건강센터, 심리상담 바우처 연계 예정</li> <li>• 1-11 남은 의료비는 어떻게 감당하는지? 대상자 현재 의식불명이면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gt; 11/29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여 현재 조사 진행 중임. 추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책정되면 해당 자격 보장받을 예정임. 최종 청구된 의료비에서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후 남은 차액은 8,281천원으로 해당 비용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책정에 의한 의료비 감면혜택 및 병원내 지원사업비 등을 통해 해결될 예정.</li> </ul>														

◆ 제2안건-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안) : 24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24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li> <li>•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li> <li>•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및 사실상 이혼 인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li> </ul>	

☞ 서면심의 의견 및 답변

<b>심의의견 및 담당부서답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8 그 외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함. 현재 다른 지원(활동보조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함.</li> </ul> <p>-&gt; 해당 신청인의 경우 뇌병변, 심한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중에 있으며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의료비가 시급한 세대로 판단되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서비스 선정을 통해 의료비 감면 혜택 지원함.</p> <p>-&gt; 동 주민센터의 담당자와 연계를 통해 이웃돕기 물품 등 서비스 지원함.</p>
----------------------	---

◆ 제3안건-기존 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 및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 관련 사항 심의(안): 3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가족수	심의사항	원안 가결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 해체</li> </ul>	

◆ 제4안건-민관협력사업 선정 및 배분요구 심의(안) : 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b>연수마을 나눔냉장고</b>		원안 가결
사업기간	2022.2월 ~ 12월	
사업내용	관내 5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나눔냉장고에 기부된 식료품을 저소득층 이용자와 나눔	
심의요구사업비	6,000천원(구 연합모금)	

☞ 서면심의 의견 및 답변

<b>심의의견 및 담당부서답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물품이 적절하게 배분되길 바람</li> </ul> <p>-&gt; 관내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자들에게 적의 배분토록 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0만원 심의 내역이 부족함. 예산 사용 내역 미첨부 됨.</li> </ul> <p>-&gt; 식료품구입비(200,000원) × 6개월 × 5개소 = 6,000,000원</p>
----------------------	---

◆ 제5안건 『연수e웃나눔』사례 선정 심의(안) : 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가구수	신청분야	심의사항	원안 가결
1	생활비	• 대상자 선정	

☞ 서면심의 의견 및 답변

심의의견 및 담당부서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이 필요한 사례라 사료됨. 다만 긴급성 부분이 모호함.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세/관리비 체납된 가구가 매우 많음을 고려할 때 특별히 해당 세대 지원이 필요한지? 해당 가구는 사례관리 대상 가구로 선정, 장기적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부채 상환으로 매달 체납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임.</li> </ul> <p>-&gt; 공감되는 바이나 상담 결과 신청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문제의 시급성, 심각성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신청자의 문제 상황과 문제 해결 능력, 자원 및 지지체계, 욕구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수하였음.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신청자가 스스로 월세 및 난방비 체납액을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 및 자원이 부족하다 판단됨. 이에 현재 누적된 체납 문제를 해소한 이후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 대상 추천 등 장기적 지원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음.</p>
------------------	--

◆ 제6안건-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심의(안) : 1건

내용 및 요청사항			결과
사회복지법인 인천다비다원 외부이사 추천 심의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인천다비다원</li> <li>•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 노인복지</li> <li>• 요청사항 : 외부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추천 요청</li> </ul>			

추천후보	김석겸(6표)	황성주(5표)	김기완(3표)
예비 추천후보	김구일(7표)	김순영(5표)	정미경(3표)

차기회의

- ◆ 2022년 제1차 전문위원회 회의
- 일시 : 2022년 1월 27일(목) 예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